

## 『숲속 힐링 프로그램 사업』 보조사업자 공모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『숲속 힐링 프로그램 사업』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5년 2월 12일

경상북도지사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『숲속 힐링 프로그램 사업』
- 나. 지원액 : 6,000천원(도비)
- 다. 사업기간 :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5. 12월 까지
- 라. 사업목적 : 생태탐방과 숲 치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, 도내 주요 생태관광 명소에 대한 전국 홍보
- 마. 사업내용 : 숲 체험, 생태탐방, 체험교육 등 숲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

### 2. 신청자격 등

#### 가. 신청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기관·단체
- 최근 5년 이내 광역단위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)
  - ※ 경상북도내 환경관련단체 우대(경상북도 환경관련단체 육성정책 일환)

#### 나. 지원제외 대상

- 영리목적 단체,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·사업

- 개인,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
- 道 단위 단체의 지부·지회 성격의 단체
- 사업 활동(수혜) 지역이 특정 1개 시·군에 한정된 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
- 당해 연도에 동일사업을 위해 道 및 시·군 등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된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단체
-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단체

#### 다. 지원 범위 및 기준

-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(자체 운영비, 자본적 경비 제외)
- 사회단체 설립 목적 및 본 공모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총사업비의 15%이상 자부담 원칙(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)

### 3. 사업계획 반영사항

#### 가. 답사 프로그램 운영

- 주말, 성수기 등을 감안하여 숙박 및 음식점, 체험학습장의 경우 사전예약을 필수로 하며, 시·군 등 해당시설 관리·운영 담당자와 협조 및 유의사항 사전 협의
- 사전답사 시 보조사업자의 출장비 등 관련 경비는 숲속 힐링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에 포함

#### 나. 참가자 모집 및 선발

- 참가자 모집은 전국으로 하되 대구·경북 이외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선발

- 보조사업자 홈페이지, SNS 및 On·Off-line 등을 통한 모객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
- 선발된 참가자의 당일불참(No-show)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참가자에 일률적으로 참가비를 사전에 받을 수 있으나, 참가비는 전액 본 사업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정산시 사용내역을 증빙하여야 함
- 기타 제반사항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을 준수

#### 4. 지원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. 19.(수)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(보탬e) 신청

※ 단,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(18:00까지) 신청완료분에 한함

다. 문의처 : 경북도청 기후환경정책과(☎ 054-880-3525)

라. 제출서류

- 보조금 지원신청서, 단체소개서, 보조신청사업계획서 각 1부
-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(기관·단체 설립 허가증), 사업실적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※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음.

#### 5. 사업자 선정 및 발표

가. 선정방법 :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·선정

나. 선정기준

-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, 독창성, 경제성,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,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,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·개발성 및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

다. 선정결과 발표 :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(보탬e) 게시

## 6. 보조금 지급, 사업정산 및 평가

- 가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
- 나. 사업비(자체부담예산 포함)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(클린카드) 사용 집행
- 다.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(자체부담예산 포함), 반드시 12.31.까지 사업완료
- 라. 사업평가를 실시(필요시 중간점검 및 현지조사 등)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,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
- 나.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,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.
- 다. 보조금의 지원대상, 대상사업, 제외대상,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道의 자체 판단에 의함
- 라.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